

인천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62013(본소), 2021나62020(반소) 판결

[지체상금등청구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김경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B

피고, 항소인 C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준만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4.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19가단264372(본소), 2020가단 267681(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의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7,26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6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가. 본소 :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6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들의 항소이유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식품공장 신축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8. 8. 27. 완료하였고, 건축주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61,200,000원이며, 원고의 추가적인 공사요구에 따라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인데도, 영세업체인 피고 회사나 피고 C이 건축주인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각서 만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지체상금 지급책임,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본소 부분), 피고 회사의 위 공사대금지급 청구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반소 부분)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미 피고들이 제1심법원에서 주장하였고,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각 처분문서에 기하여,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8호(갑 제1호증, 8쪽) 기재와 같이 ‘3층 옥탑방 완공시 잔금 지급’이라는 피고 회사의 약속, ② 피고 회사 및 피고 C 작성의 2018. 9. 6.자 각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같은 해 10. 25.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그 때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을 포기하며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의 1/1,000을 지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 ③ 피고 회사(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음)의 대표이사 E이 작성해 준 2018. 10. 25.자 공사완료확인서(갑 제5호증)의 ‘같은 해 11. 25.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이며, 그 때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약속 등에 근거하여, 2018. 8.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있었으니 그 날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은 위 각 처분문서에 기한 사실 인정을 토대로 한 판단으로서 매우 정당하므로, 이 법원도 그 상세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공사대금 포기 약속에 위반한 청구여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각 항소와 이 사건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 회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기두, 판사 소병진, 판사 원용일